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57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부산은행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◦ 「은행법」상 '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이사회 의결 및 보고·공시의무위반'으로 과태료 2억 1,200만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1.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이사회 의결 및 보고·공시의무 위반

◦ 「은행법」 제35조의3 제4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, 취득한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나,

- 20xx.x.x. ㈜부산은행은 대주주(○○○○)의 특수관계인인 '♧♧♧♧'의 지분증권을 50억원 취득하였으나, 취득하기 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, 취득한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◦「은행법」 제35조의3 제6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나,

- 20xx.x.x.~20xx.x.x. 기간 중 부산은행은 대주주(○○○○)의 특수관계인인 '♥♥♥♥♥' 등 5개의 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동 투자조합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였음에도 20xx년 x분기~20xx년 x분기기간 중 본건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(xx회차)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「은행법」 제35조의3 제4항 내지 제6항, 제69조 제1항
○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1조의4 제1항, 제20조의8 제4항 및 제5항, 제31조 [별표4]